

감자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

(주)에스마크는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를 2018년11월 28일 개최한 임시주총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소유주식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수령하시기 바라며, 감자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자본금 감소에 관한 사항

- 1) 감사이유: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 감소
- 2) 자본감소 방법: 보통주 20주를 0.05의 비율로 병합
- 3) 감자효력 발생 기준일: 2018년 12월 28일

2. 구 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

- 1) 구 주권 제출기간: 2018년 11월 29일 ~ 2018년12월 28일
- 2) 신 주권 교부예정일: 2019년 01월 10일
- 3) 구 주권제출 및 신주권 수령장소:
 - ① 일반주주: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국민은행)
 - ② 실질주주: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식과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은 주식병합 기준일에 실질주주의 기재에 의하여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

3.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

- 1)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로 상법 439조 제2항에 의거 동 조항에 따른 경우 동법 제232조(채권자이의)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이의제출절차가 생략됩니다.

4. 기타사항

- 1) 신주권 등록 예정일: 2019년 01월 11일
- 2) 단수주의 처리방법: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- 3) 주주권제출 및 신주권 수령시 신분증과 등록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
상법 제354조에 의거 주식병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등록,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주주 확정일 :
2018년 12월 28일
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
2018년 12월 29일 ~ 2019년 01월 09일

2018년 11월 28일

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농공2길 21(가주동)
주식회사 에스마크

대표이사 신 희 주
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허 인